

내 삶을 바꾸는
규제혁신



관세청



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



01

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

종 전

□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* 구축
(2개 국가, 3개 협정)

* 원산지증명 정보가 관세당국간 전자 교환되는 경우
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원칙적 생략

- 중국
 - 한-중 FTA('16.12)
 -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('16.12)
- 인도네시아
 - 한-아세안 FTA('20.3)
 - 〈신 설〉
- 〈신 설〉

달라지는 내용

□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구축 **확대**
(4개 국가, 7개 협정)

- 중국
 - }] 〈현행과 같음〉
- 인도네시아
 - 〈현행과 같음〉
 - 한-인도네시아 CEPA('23년下 예정)
- 베트남
 - 한-아세안 FTA('23.7.15.)
 - 한-베트남 FTA('23.7.15.)
- 인도
 - 한-인도 CEPA('23년下 예정)

기대효과 특혜관세 적용 절차 간소화, 물류·통관 시간 단축 및 해외 통관애로 방지 효과 등
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

시행일 베트남(한-베트남, 한-아세안 FTA)은 '23. 7. 15. 정식 개통,
한-인도네시아 CEPA 및 한-인도 CEPA는 '23년 하반기 개통 추진

기 존



확 대





02

우수 재활용 제품을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지정

종 전

□ 원산지 간편인정* 서류 및 품목

* 관세청장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
법령에 근거한 인증서·등록증·확인서 등을
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하는 제도

- 관세청장이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
 - ‘친환경농산물 인증서’, ‘물김 구매확인서’ 등 18종
 - 〈신 설〉
- 적용 대상 품목(총 1,200개 품목)
 - 농산물: 1,028개 품목
 - 수산물: 81개 품목
 - 축산물: 5개 품목
 - 식품류: 39개 품목
 - 지역특산물: 47개 품목
 - 〈신 설〉

달라지는 내용

□ 원산지 간편인정 서류 및 품목 확대

- 관세청장이 원산지(포괄)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 확대
 - 〈현행과 같음〉
 - ‘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’
- 적용 대상 품목 확대(총 1,225개 품목)
 - 〈현행과 같음〉
 - 우수 재활용제품: 25개 품목*
 - *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, 정제연료유,
재활용 트레이드 타이어 등

기대효과 재활용 물품 제조기업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

시행일 '23. 3분기 시행 예정(「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(포괄)확인서 고시」개정)

확 대

우수재활용제품



원산지증명서



03

파나마 해상 환적 미국산 물품의 직접운송 인정 기준 마련

중 전

- 비당사국 경유·환적되는 물품의 한-미 FTA 직접운송 요건*
 - * 한-미 FTA 협정문 제6.13조
 - 허용된 공정* 이외의 공정 미수행
 - * 하역·재선적, 양호한 상태로의 상품 유지, 운송에 필요한 공정
 - 비당사국 세관 당국의 통제

□ <신 설>

달라지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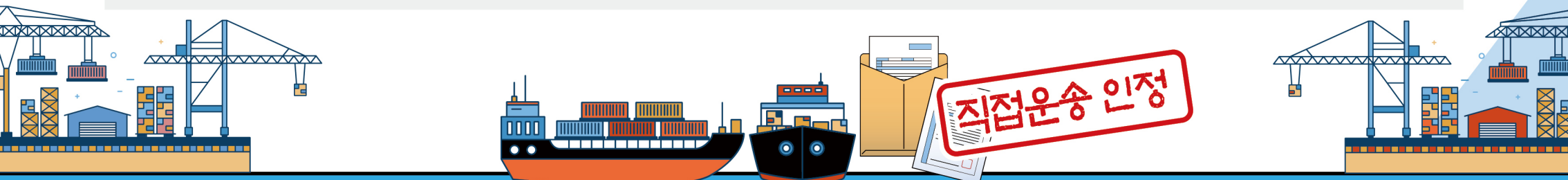
□ <현행과 같음>

□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 시 한-미 FTA 직접운송 증빙서류

- 전체 운송경로* 확인 서류(선하증권 등)
 - * 미국→파나마, 파나마→한국
- 파나마 항만청에서 발급한 ‘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*’
 - * STS Operations Supervision Report

기대효과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되는 미국산 액체화물(원유·가스)의 직접운송 인정 기준 마련으로 기업 FTA 활용 편의 개선

시 행 일 '23. 7. 19. 시행(「파나마 해상 환적 물품 한-미 FTA 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 방법」지침 시행)



대한민국

파나마에서 해상 환적시 증빙서류 제출

미국

04

전자상거래물품 관련 통관우대업체 신설

종 전

□ 〈신 설〉

□ 〈신 설〉

□ 〈신 설〉

달라지는 내용

□ **통관우대업체 정의 신설**

- 전자상거래업체 중 일정 요건에 따라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

□ **통관우대업체 신청요건 신설**

- 전자상거래업체가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하기 위한 필수요건* 등 규정
- *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신청, 사이버몰 직접 운영, 거래정보 전송 등

□ **통관우대 절차 신설**

- 통관우대 대상물품*에 대하여 스마트통관** 적용 가능
- * 통관우대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
- ** 수입신고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적 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심사 처리

기대효과 전자상거래물품의 신속통관 지원으로 통관적체 해소 및 해외직구 소비자 편익 증진

시 행 일 '23. 7. 1. 시행(「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」 전부 개정)

신 설

전자상거래
통관우대업체



05

Master B/L 단위 보세운송 신고 시행

중 전

- House B/L 발행 화물의 보세운송 신고 방법
 - ‘Master B/L’과 ‘House B/L’ 모두 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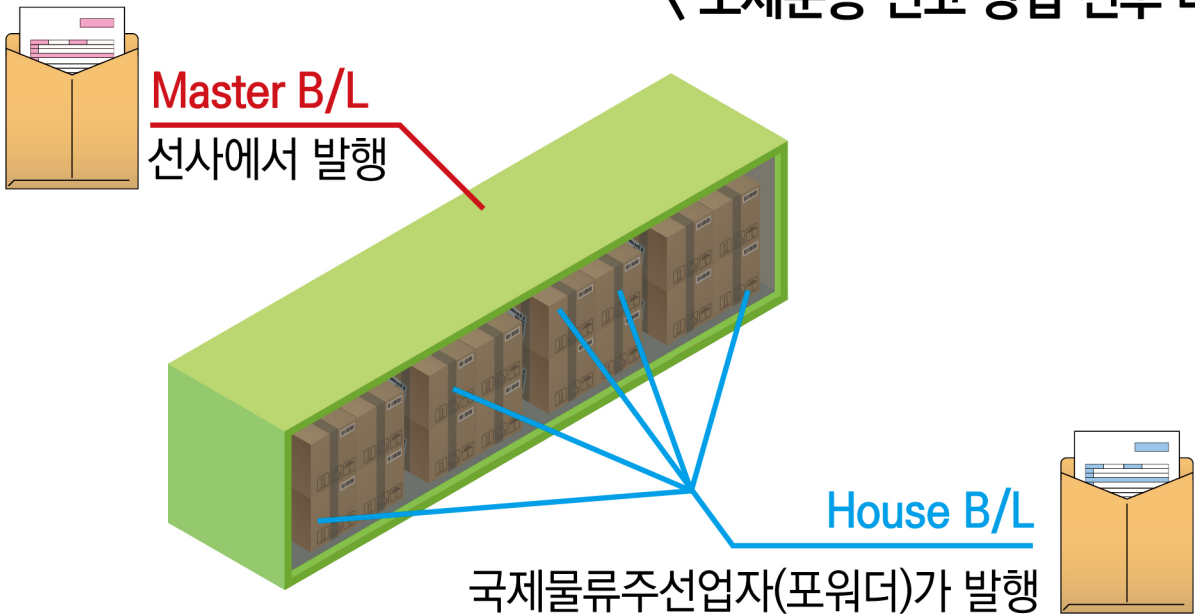
달라지는 내용

- House B/L 발행 화물의 **보세운송 신고** 방법 **간소화**
 - **Master B/L만 신고 가능**
 - 해상 소량화물(LCL) 중 컨테이너에서 **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** 컨테이너 야적장(CY)에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*에 한함
 - * 관세법 제213조 제1항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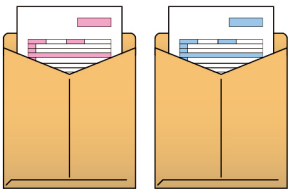
기대효과 물류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으로 물류 경쟁력 강화

시행일 '23. 7. 18. 시행(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선)

〈 보세운송 신고 방법 전후 비교(예시)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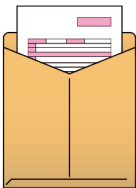


기 존



Master B/L(1개),
House B/L(2,000개)
모두 신고

개 선



Master B/L(1개)만 신고

※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않고 운송시

* 컨테이너(1대) = Master B/L(1개) + House B/L(2,000개)

06

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납부 서비스 시행

중 전

- 모바일 신고 세관
 - 2개 공항
 - 공항 : 인천(T2)·김포
- 모바일 신고 세금 납부 방법
 - 세관검사 후 납부고지서(종이)로 세금 납부

달라지는 내용

- 모바일 신고 세관 **확대**
 - **전국 15개 공항·항만**
 - 공항:인천(T1·T2)·김포·김해·제주·청주·대구·무안·양양
 - 항만:인천·부산·군산·평택·속초·동해·제주
- 세금 납부 방법 간소화
 - 세관검사 생략 가능 및 모바일(앱)로 **전자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세금 납부**
 - ※ FTA 세율 적용·외국환신고·검역대상 등은 제외

기대효과 성실신고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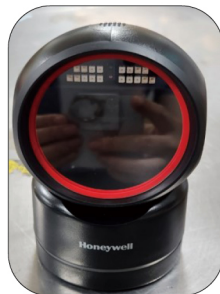
시행일 '23. 8. 1. 시행



① 여행자 세관신고 앱(App) 접속
(기본정보 입력, 전자송달 동의)



② 과세물품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기 Click
↓
QR코드 발급



③ QR코드 리더기 스캔
(「세관 신고있음」통로)



④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 수신 및 세금 납부

현품확인 생략, 전자 납부고지서 → **신속통관**

07

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개선

중 전

-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
사후관리 대상물품 지정·운영
- 자율사후관리(AEO) 업체가
수입한 물품에 대해 최대 3년간 사후관리

달라지는 내용

-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
사후관리 **생략물품** 지정·운영
 -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(별표1의 가 → 별표1의 나)
- 자율사후관리(AEO) 업체가 수입한 부분품, 원재료에
대해 **1년 이내** 기간동안 **사후관리** 하도록 기간 단축
 -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(제24조)

기대효과 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경감

시행일 '23. 7. 11. 시행(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)



기 존

3년간 사후관리

단 축

1년 이내 사후관리

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감소



08

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연장

종 전

-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에 대한의견 제출기간
-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제출

달라지는 내용

- **의견 제출기간 연장**
- 통지일부터 **20일** 이내 제출

기대효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국민권익 보호

시행일 '23. 10. 1. 시행 예정(「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」 제9조 개정)



기 존

통지일부터 15일 이내

연 장

통지일부터 **20일** 이내

국민권익 보호

환전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환전업 제도개선

종 전

- 환전업등록증(한국어 서식만 운용)
 - 한국어로만 표기된 환전영업자 등록증 서식 운용
- <신 설>

달라지는 내용

- 환전업등록증(**외국어 서식 신설**)
 - 외국인 환전 고객을 위해 **외국어**(영어, 중국어, 일본어) 표기 환전영업자 등록증을 신설하고, 등록증을 고객이 '식별이 용이한 곳'에 게시
- **영업정지 처분 안내문**
 - 영업정지 안내문을 신설하고, 관할 세관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전영업자의 영업장에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

기대효과 외국어 표기 등록증, 영업정지 표지 등 서식 신설 및 식별 용이한 곳에 게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환전 고객의 편의 제고 및 피해 예방

시행일 '23. 8월 시행 예정(「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」 개정)



외국어 환전업등록증



영업정지 처분 안내문



종 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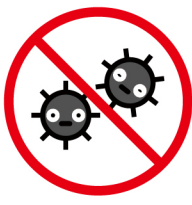
-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
 - 수출입 제한 또는 금지물품
 - 세관장 확인 필요 물품
 - 판매목적 물품 또는 대가지급 물품
 - 가공무역목적 무상 수출입물품
 -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초과물품
 - < 추 가 >

달라지는 내용

-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추가
 - <현행과 같음>
 - 건강기능식품·의약품

기대효과 유해물품 통관심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

시행일 '23. 7. 1. 시행*
 * 다만, 전자상거래 우편물은 '24. 6. 30.까지 수입신고 유예
 (「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」 개정)



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건강기능식품·의약품 추가